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유럽연합 복구기금 관련 결정

독일 레겐스부르크 대학교 법학 박사과정 정다운

## I. 들어가는 말

2020년 7월 유럽연합 이사회(Rat der Europäischen Union)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각 회원국에 미친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영향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 차원의 임시 복구수단(temporäres Aufbauinstrument)인 ‘차세대 EU(Next Generation EU, NGEU)’를 도입하는 데에 합의하였다.<sup>1)</sup> NGEU 프로그램의 핵심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위기에 처한 회원국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äische Kommission)는 ‘복구 및 회복기구(Aufbau- und Resilienz-fazilität, ARF)’를 설치하였다.<sup>2)</sup> 또한 유럽연합 이사회는 2020년 12월 14일 복구기금(Wiederaufbaufond)의 조달 및 운용을 위해 2021년부터 2027년까지의 ‘다년간 재정운용계획(Mehrjähriger Finanzrahmen, MFR)’<sup>3)</sup>을 확정하고, ‘자체재원결정 2020(Eigenmittelbeschluss 2020)’<sup>4)</sup>을 통해 새로운 자체재원을

1) Europäische Kommission, Europäischer Aufbauplan, [https://commission.europa.eu/strategy-and-policy/recovery-plan-europe\\_de](https://commission.europa.eu/strategy-and-policy/recovery-plan-europe_de), 최종 검색일: 2023. 6. 13.

2) Europäische Kommission, Die Aufbau- und Resilienz-fazilität, [https://commission.europa.eu/business-economy-euro/economic-recovery/recovery-and-resilience-facility\\_de](https://commission.europa.eu/business-economy-euro/economic-recovery/recovery-and-resilience-facility_de), 최종 검색일: 2023. 6. 13.

3) 유럽연합의 다년간 재정운용계획은 최소 5년 단위로 수립되며, 유럽연합의 지출 예산이 자체재원(Eigenmittel)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연간 예산안(jährlicher Haushaltsplan), 항목별 지출 상한액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Europäisches Parlament, Mehrjähriger Finanzrahmen, <https://www.europarl.europa.eu/factsheets/de/sheet/29/mehrjaehriger-finanzrahmen>, 최종 검색일: 2023. 6. 13.).

4) 유럽연합의 세입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각 회원국의 의무 사항과 재정 분담에 관해 규정한 결정으로, 이 결정을 통해 관세, 부가가치세 등의 기존 자체재원 수단에 재활용할 수 없는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부과금이 추가되는 등 새로운 자체재원 관련 규정들이 마련되었다. 또한 자체재원결정 2020에 따르면 유럽연합 위원회는 2026년까지 2018년 가격 기준 7,500억 유로(약 1,041조 원)의 기금을 금융시장에서 부채로 조달할 수 있다(Rat

도입하였다. 이 자체재원결정은 모든 회원국 내에서 반드시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독일에서는 연방정부가 제출한 ‘자체재원결정 비준법률안(Entwurf des Eigenmittelbeschluss-Ratifizierungsgesetzes)’<sup>5)</sup>이 2021년 3월 25일 연방의회를 통과했고, 다음 날 연방참사원 또한 이에 동의하였다.<sup>6)</sup> 그러자 연방헌법재판소에 자체재원결정 비준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가처분 신청이 즉각 제기되었고,<sup>7)</sup> 연방헌법재판소는 2020년 3월 26일 이 법률에 대한 연방대통령의 서명 및 공포 절차를 잠정적으로 중지하는 결정을 한 후 신속히 이루어진 긴급처리절차(Eilverfahren)에서 결국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sup>8)</sup> 기각결정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비준법률이 연방의회의 예산 자치권(Haushaltsautonomie) 보호에 대한 기본법상 규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면서,<sup>9)</sup> 당시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맞게 신속한 재정 지원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과 지원이 제공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의 규모에 대한 결과형량(Folgenabwägung)을 해 보면, 독일의 NGEU 프로그램 참여를 계속해서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자체재원결정 비준법률은 2021년 4월 23일 연방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4월 28일 공포되었다. 이후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의 본안인 헌법소원심판을, 자체재원결정 비준법률에 대해 제기된 또 다른 헌법소원심판

---

der Europäischen Union, Beschluss (EU, Euratom) 2020/2053 des Rates vom 14. Dezember 2020 über das Eigenmittelsystem der Europäischen Union und zur Aufhebung des Beschlusses 2014/335/EU, Euratom,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DE/TXT/HTML/?uri=CELEX:32020D2053>, 최종 검색일: 2023. 6. 13.).

5) Deutscher Bundestag, Entwurf eines Gesetzes zum Beschluss des Rates vom 14. Dezember 2020 über das Eigenmittelsystem der Europäischen Union und zur Aufhebung des Beschlusses 2014/335/EU, Euratom (Eigenmittelbeschluss-Ratifizierungsgesetz - ERatG), BT-Dr. 19/26821, <https://dserver.bundestag.de/btd/19/268/1926821.pdf>, 최종 검색일: 2023. 6. 13.

6) Deutscher Bundestag, Karlsruhe sieht keinen Einstieg in eine EU-Transferunion, <https://www.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2022/kw49-verfassungsgericht-transferunion-925230>, 최종 검색일: 2023. 6. 13.

7) 청구인들 겸 신청인들(이하 ‘청구인들’이라고만 한다)은 ‘독일을 위한 대안당(Alternative für Deutschland, AfD)’의 설립자이자, 현재는 ‘자유보수 개혁당(Liberal-Konservative Reformen)’ 소속인 베른트 룩케(Bernd Lucke)를 포함한 2,281명의 시민으로, 이들은 자체재원결정 비준법률이 기본법 제79조 제3항에 의해 보호되는 연방의회의 예산정책에 대한 전반 책임(Gesamtverantwortung)을 훼손하고, 나아가 제38조 제1항에 의해 보호되는 청구인들의 민주적 자기결정권(demokratische Selbstbestimmung) 또한 침해한다는 주장하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법률에 대한 대통령의 서명 및 이후 공포 절차를 본안 결정 때까지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II.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8) 연방헌법재판소 2021. 4. 15. 결정, 2 BvR 547/21.

9) 다만 연방헌법재판소는 이후의 본안절차(Hauptsacheverfahren)에서 이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과 함께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약 일 년 반만인 2022년 12월 6일 두 건의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sup>10)</sup> 다만 이 결정은 재판관 페터 뮐러(Peter Müller)의 반대의견(Sondervotum) 제기로 인해 전원일치하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아래에서는 NGEU 프로그램의 복구기금 조달을 위해 마련된 유럽연합의 자체재원결정 2020 및 이에 대한 독일의 비준법률과 관련하여 연방헌법재판소가 발표한 최근 결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II.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

### 1. 청구인들 주장의 요지

청구인들은 자체재원결정 비준법률이 기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sup>11)</sup>, 제79조 제3항<sup>12)</sup>과 연계한 제38조 제1항 제1문<sup>13)</sup>에서 도출되는 민주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기본법 제79조 제2항<sup>14)</sup>과 연계한 제23조 제1항 제3문<sup>15)</sup>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청구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자체재원결정 2020은 유럽연합을 재정연합(Fiskalunion)으로 변화시키려는 시도로, 다른 정책적, 경제적 대안들이 있음에도 향후 38년간 회원국들의 예산을 연대책임(Gemeinschaftshaftung)으로 끌어들이는 뿐 아니라 유럽연합의 예산상 형성여지(Gestaltungsspielraum)를 상당히 제한한다.

---

10) 연방헌법재판소 2022. 12. 6. 결정, 2 BvR 547/21, 2 BvR 798/21.

11) **[기본법 제20조]**

제1항: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연방국가이다.

제2항: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권력은 국민에 의하여 선거와 투표를 통해 행사되고, 입법·집행 및 사법기관을 통해 행사된다.

12) **[기본법 제79조]**

제3항: 연방이 주들로 편성되는 것과 입법에 있어 주의 원칙적인 협력, 그리고 제1조 및 제20조의 기본원칙을 침해하는 기본법 개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13) **[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1문: 독일연방의회 의원은 보통 · 직접 · 자유 · 평등 및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14) **[기본법 제79조]**

제2항: 이러한 법률은 연방의회 제적의원의 3분의 2의 찬성과 연방참사원 의원 투표의 3분의 2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15) **[기본법 제23조]**

제1항 제3문: 유럽연합의 설립에 관하여, 그리고 기본법을 내용상 개정 또는 보충하거나 그러한 개정 및 보충을 가능하게 하는 조약상 근거 및 이에 준하는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는 제79조 제2항과 제3항이 적용된다.

## 2. 다수의견의 주요 내용

### (1) 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1문의 민주적 자기결정권의 내용 및 보호영역

첫째, 민주적 자기결정권은 기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제79조 제3항과 연계한 제38조 제1항 제1문에서 도출되며, 독일 연방의회의 형성권(Gestaltungsmacht)이 실질적으로 공동화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조직 및 기관 등이 기본법 제23조 제1항16)의 기준에 따라 오직 이양받은 범위 안에서 관할권(Zuständigkeit)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장한다. 이러한 권리는 유럽연합의 조직 및 기관 등이 유럽연합의 통합프로그램(Integrationsprogramm)에 포함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할 때, 또는 통합프로그램의 수행 시 기본법 제79조 제3항의 한계를 지키지 않았을 때 침해된다. 또한 기본법 제23조 제2항17) 및 제3항18)과 무엇보다도 제38조 제1항 제1문에서 연방의회, 연방정부와 같은 헌법기관의 통합책임(Integrationsverantwortung), 즉 유럽연합의 조직 및 기관들이 헌법상의 한계를 준수하여 통합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보장해야 할 책임이 도출된다. 이 때 통합책임을 지는 헌법기관들이 어떠한 구체적 의무를 갖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의무의 위반은 관할 헌법기관이 보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거나, 시행된 조치들이 명백히 부적합하거나 완전히 불충분한 경우 또는 보호목적의 달성에 상당히 미치지 못할 때에만 인정된다.

둘째, 민주적 자기결정권은 무엇보다도 먼저 유럽연합의 조직 및 기관 등

---

#### 16) [기본법 제23조]

제1항: 통합 유럽을 실현하기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법치국가적·사회적 및 연방주의적 원칙들과 보충성의 원칙을 존중하고 기본법과 본질적으로 같은 기본권 보호를 보장하는 유럽연합이 발전하는 데에 협력한다. 연방은 이를 위해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어 법률에 의하여 고권을 이양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설립에 관하여, 그리고 기본법을 내용상 개정 또는 보충하거나 그러한 개정 및 보충을 가능하게 하는 조약상 근거 및 이에 준하는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는 제79조 제2항과 제3항이 적용된다.

#### 17) [기본법 제23조]

제2항: 연방의회, 그리고 주는 연방참사원을 통해 유럽연합에 관한 사안에 관여한다. 연방정부는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에 포괄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한 조속히 보고해야 한다.

#### 18) [기본법 제23조]

제3항: 연방정부는 유럽연합의 입법행위에 참여하기에 앞서 연방의회에 의견 표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연방 정부는 협의 시 연방의회의 의견표명을 고려한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이 자세히 정한다.

이 고권적 권한(hoheitliche Befugnisse)을 독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지한다. 비준법률이 동의한 통합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할 때, 이는 기본법 제1조 제1항19)에 의해 보호받는 국민주권(Volks-souveränität)의 원칙에 위배된다. 유럽연합은 이미 ‘유럽연합 조약(Vertrag über die Europäische Union)’<sup>20)</sup> 제5조 제1항 제1문21)에 ‘제한적 개별수권의 원칙(Prinzip der begrenzten Einzelermächtigung)’을 마련하여 권한 행사의 한계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월권 심사(Ultra-vires-Kontrolle)’를 통해 유럽연합의 통합프로그램을 검토하는데, 월권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충분히 실질적인 수준의 권한초과(Kompetenzüberschreitung)가 확인되어야 한다. 즉 권한초과가 명백하고 회원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권한분배와 관련하여 구조적으로 중대한 문제여야 한다. 이때 명백히 권한을 초과한 경우는 어떠한 법적 관점에서든 그 권한의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때를 말한다. 또한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권한초과가 유럽연합 조약의 제한적 개별수권의 원칙과 법치국가적 ‘법률에의 구속(Gesetzesbindung)’ 관점에서 회원국에게 불이익을 주는 중대한 사안일 때, 예를 들어 조약의 변경까지 필요한 때를 말한다.

셋째, 민주적 자기결정권은 유럽연합의 조직 및 기관 등이 시행하는 조치들이 기본법 제79조 제3항에 불가침으로 선언된 기본법 제20조의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될 때에도 침해되며, 이는 연방의회의 형성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경우를 뜻한다. 구체적으로 기본법 제20조 제1항 및 2항, 제79조 제3항 상에 규정된 개정이 불가능한 민주주의 원칙의 한 부분으로 연방의회의 예산승인권(Budgetrecht)이 보호되고 연방의회가 예산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의 수입 및 지출, 부채 총액에 대한 결정

19) [기본법 제1조]

제1항: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될 수 없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

20) Europäische Union, Vertrag über die Europäische Union, [https://eur-lex.europa.eu/resource.html?uri=cellar:2bf140bf-a3f8-4ab2-b506-fd71826e6da6.0020.02/DOC\\_1&format=PDF](https://eur-lex.europa.eu/resource.html?uri=cellar:2bf140bf-a3f8-4ab2-b506-fd71826e6da6.0020.02/DOC_1&format=PDF), 최종 검색일: 2023. 6. 13.

21) [유럽연합 조약 제5조]

제1항 제1문: 유럽연합 권한의 한계 설정을 위해 제한적 개별수권의 원칙을 적용한다.

등은 기본법상 연방의회의 책임에 해당하며 불가침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들과 조세 항목 및 수준의 확정과 관련된 사항 등이 중대한 범위에서 초국가화되는 경우 연방의회는 처분권(Dispositionsbefugnis)을 잃고, 이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됨과 동시에 국민의 민주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 원칙을 포함해 제79조 제3항에 의해 보호되는 헌법상 원칙들의 준수 여부를 이른바 ‘정체성 심사(Identitätskontrolle)’의 틀에서 검토한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의 조직 및 기관 등의 조치가 기본법 제79조 제3항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법의 본질적 영역(Kernbereich), 즉 ‘헌법 정체성(Verfassungside ntität)’을 보장하는지 혹은 훼손하는지 여부가 검토된다.

## (2) 자체재원결정 비준법률의 민주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판단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이하 ‘재판부’)는 자체재원결정 비준법률이 청구인들의 민주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하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상술한 민주적 자기결정권의 내용 및 보호영역과 이와 관련한 월권 심사 및 정체성 심사의 기준에 따라 자체재원결정 2020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결과이다.

먼저 월권 심사 결과 재판부는 자체재원결정 2020이 현 유럽연합 통합프로그램의 범위를 명백히 넘지 않으며, 구조적으로 중대한 권한초과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았다. 우선 자체재원결정 2020은 자체재원에 관한 규정인 ‘유럽연합 운영조약(Vertrag über die Arbeitsweise der Europäischen Union, AEUV)’<sup>22)</sup> 제311조 제2항 및 제3항<sup>23)</sup>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유럽연합 위원회가 NGEU 프로그램의 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시장에서 2018년 가격

22) Europäische Union, Vertrag über die Arbeitsweise der Europäischen Union, <https://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12012E/TXT:de:PDF>, 최종 검색일: 2023. 6. 13.

### 23) [유럽연합 운영조약 제311조]

제2항: 예산은 그 외 수입과 상관없이 완전히 자체재원으로 조달된다.

제3항: 이사회는 특별 입법절차에 따라 만장일치로, 유럽의회의 청문을 거친 후 유럽연합의 자체재원 시스템에 관한 규정들이 마련된 결정을 공포한다. 그 결정을 통해 자체재원의 새로운 항목이 도입되거나 기존 항목이 폐지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회원국의 헌법 규정과 일치하고 각 회원국의 동의가 이루어진 후에야 발효된다.

기준 7,500억 유로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한 개별수권조항은 이 조약을 포함하여 유럽연합의 다른 어떤 조약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대출금은 유럽연합 운영조약 제311조 제2항의 ‘그 외 수입(sonstige Einnahmen)’으로 해석되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데, 이러한 예외적 허용은 조약상에는 아닐지라도 자체재원결정에 대출에 대한 수권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그러한 자금의 용도가 확정되어 있으며, 대출의 기한이 정해져 있고, 상한액 또한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재판부는 자체재원결정 2020의 제5조<sup>24)</sup>에 금융시장에서의 대출을 허용하는 수권조항이 존재하며, 이러한 대출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투입된 ‘역사적 예외사례(historischer Ausnahmefall)’로 엄격히 그 목적이 한정되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상한액이 7,500억 유로로 명시되어 있고, 대출 기한 또한 2026년으로 확정되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다양한 판단이 있을 수 있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대출금이 유럽연합 운영조약 제311조 제2항의 ‘그 외 수입’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재판부의 이러한 수권규정 관련 해석에 따를 때 유럽연합 위원회가 대출을 통해 NGEU 프로그램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자체재원결정 2020은 어떤 관점에서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명백한 월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약의 변경이 필요할 정도로 구조적으로 중대한 월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정체성 심사 결과 재판부는 자체재원결정 2020이 연방의회의 예산정책에 대한 전반적 책임을 훼손하지 않아 기본법 제79조 제3항이 보호하는 기본법의 헌법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체재원결정 2020에 근거해 연방의회의 예산승인권은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수준의 연방예산에 대한 의무가 명백히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자체재원결정 2020을 통해 독일 연방의회의 예산승인에 대한, 중대한

24) 이 규정에 따르면 유럽연합 위원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여 2026년까지 2018년 가격 기준 7,500억 유로(약 1,041조 원)의 기금을 금융시장에서 부채로 조달할 수 있으며, 회원국에게 이 중 3,900억 유로(약 541조 원)를 재정지원금(Finanzhilfe)으로, 3,600억 유로(약 500조 원)를 대출(Darlehen)로 제공할 수 있다. 전체 부채는 유럽연합의 예산으로 2058년까지 상환되어야 한다.

구조적 의미를 가질 정도의 장기적인 메커니즘이 형성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다. 나아가 NGEU 자금의 목적구속성(Zweckbindung)이 자체재원결정 2020에 명시되어 있고, 연방정부의 NGEU 프로그램 수행 시 기본법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연방의회가 협력할 가능성 또한 열려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NGEU 자금을 다루는 방식에 의회가 영향을 미칠 기회 또한 충분히 보장된다고 판단하였다. 덧붙여 재판부는 연방예산으로 부담해야 할 연간 최대금액이 210억 유로(약 30조 원)에서 280억 유로(약 39조 원)로 상당한 금액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지만, 이 또한 연방의회의 예산승인권을 공동화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자체재원결정 2020이 연방의회에 부여되는 예산정책에 대한 전반적 책임을 훼손하지 않음으로써 기본법 제79조 제3항에 불가침으로 선언된 기본법 제20조의 민주주의 원칙 측면에서 헌법 정체성 또한 보장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자체재원결정 2020에 대한 월권 심사와 정체성 심사에 따라 재판부는 이에 동의한 자체재원결정 비준법률이 청구인들의 민주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3. 반대의견의 주요 내용

재판관 뮐러는 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1문으로부터 도출되는 민주적 자기결정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유럽연합법적 문제들이 먼저 다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관의 다수가 이러한 문제들을 무시하였고, 유럽의 헌법재판소들과의 대화 또한 거부하였으며, 실질적인 월권 심사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특히 자체재원결정 2020이 조약과 같은 유럽연합의 ‘일차적 법원(法源)(Primärrecht)’에 부합하는지와 관련해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 사안은 연방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지기 전에 유럽연합재판소(Gerichtshof der Europäischen Union)에서 먼저 다뤄져야 했다고 주장하였다. 즉 그는 유럽연합재판소의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야



연방헌법재판소에도 자체재원결정 2020 제5조 제1항의 규정을 통한 월권의 명백성을 판단할 근거가 주어지고, 이로써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들의 민주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판단할 근거가 주어진다고 보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은 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1문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월권 심사에 대한 요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재판관의 다수가 유럽연합재판소에서 사안을 다룰 가능성을 포기한 채 일차적 법원의 개정 없이 유럽연합 재정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길을 열었다고 비판하였다.

### Ⅲ. 나오는 말

상기한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독일은 계속해서 유럽연합 복구기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들과 반대의견을 제시한 재판관 1인과 같이 유럽연합의 전체 재정구조뿐 아니라 독일의 경제 상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복구기금에 대해 법적 측면 및 경제적 측면에서 동시에 반대하는 의견 또한 여전히 존재한다.<sup>25)</sup> 특히 법적 측면에서는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확인됐듯이 유럽연합법적 문제들 및 실질적 월권 심사 측면에서 의견이 나뉘고 있어<sup>26)</sup> 앞으로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NGEU 프로그램의 기금은 그 사이 인플레이션에 의해 8,000억 유로(약 1,110조 원) 이상에 달한 상황이고, 가장 큰 지원을 받은 국가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 파악된다.<sup>27)</sup> 독일의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약 260억 유로(약 36조 원)를 지급받았으나, 유럽연합 공동 부채에 대해 약 650억 유로(약 90조 원)를 부담하여 회원국 중 가장 많이 부담한 것으로 조사된다. 연방회계감사원

25) Lto, Deutschlands Beteiligung an EU-Schulden verfassungskonform, 06.12.2022, <https://www.lto.de/recht/nachrichten/n/bverfg-corona-aufbaufonds-schulden-eu-beteiligung-verfassungsbeschluerde/>, 최종 검색일: 2023. 6. 13.

26) Matthias Ruffert, Nikolaus 2.0 - Zum NGEU-Urteil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vom 6. Dezember 2022, 09.12.2022, <https://verfassungsblog.de/nikolaus-2-0/>, 최종 검색일: 2023. 6. 13.

27) Zeit Online, Viel hilft viel - oder nicht?, 27.04.2021, <https://www.zeit.de/wirtschaft/2021-04/eu-wiederaufbauplan-corona-schulden-geld-klimaschutz-faq>, 최종 검색일: 2023. 6. 13.

(Bundesrechnungshof)조차 연방예산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에서,<sup>28)</sup> 앞으로의 유럽연합 복구기금의 발전 양상과 실제 경제적, 사회적 효과가 어느 수준일지 계속해서 많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

28) Lto, Zu riskant für den Bundeshaushalt? 26.07.2022, <https://www.lto.de/recht/nachrichten/n/bverfg-2-bvr-547-21-eu-corona-aufbaufonds-schulden-bundeshaushalt-haftung/>, 최종 검색일: 2023. 6. 13.